



2019년 4월 1일

군사작전  
대성동 민사행정

---

\*본 규정은 2015년 7월 9일 자 유엔군사령부 규정 525-2을 대체한다.

---

사령관을 대리하여:

마크 W. 질렛  
미합중국 육군 소장  
참모장

공식적으로:



록슨 M. 로사리오  
정책, 프로그램, 상장 관리처장

---

**요약.** 본 개정본은 2015년 7월 9일 자 유엔군사령부 (유엔사) 규정 525-2 ‘대성동 민사행정’을 대체한다. 본 규정은 유엔사의 통제하에 있는 대성동 마을과 대성동 관련 영농·어로 지역 및 이에 인접한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 (군정위 본부구역) 내 일부 지역으로 구성된 작전지역(이하 대성동 작전지역이라 지칭함)에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에 적용되는 정전협정과 정전협정 후속합의서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 필요한 전반적인 책임을 기술하고 시행한다.

**변경 개요.** 본 문건은 기존 규정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본 문건의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를 건의한다.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 관련 인원 책임 문구 일부 수정.
- 유엔사 규정 551-4 및 551-5와 동일한 양식으로 약어 표준화.

**적용.** 본 규정은 군인, 민간인을 막론하고 대성동 작전지역에 출입하거나 거주하는 모든 인원에게 적용된다. 본 규정은 현 정전 기간 중 적용되며, 정전 기간은 정전협정이 항구적인 평화협정으로 대체되거나

정전협정이 폐기되기 전까지 지속된다.

**보충.** 유엔사군정위 비서실, 부대번호 15259 군우 96271-5259 의 사전 승인 없이 예하 사령부에서 본 규정에 대한 보충물을 추가 발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기록 관리.** 본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생성된 기록물은 미 육군 규정 25-400-2 에 의거하여 식별, 유지 및 폐기되어야 한다. 기록물 제목 및 설명은 미 육군 기록 정보 관리 시스템(ARIMS) <https://www.arims.army.mil>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선 방안 제안.** 본 규정은 유엔사군정위 비서실에서 작성하였다. 의견이나 개선안은 미 육군성 양식 2028(간행물 및 공백 양식의 수정 건의)에 기재하여 유엔사군정위 비서실, 부대번호 15259 군우 96271-5259 로 제출하도록 한다.

**배급.** 전자 매체 한정(EMO).

## 목 차

1. 목적
2. 참고문헌
3. 약어 및 용어 설명
4. 책임
5. 정책

## 서식 목록

서식 1. 대성동 작전지역 지도

## 별지

A. 참고문헌

## 용어집

## 1. 목적

본 규정은 유엔사 통제하에 있는 대성동 마을, 대성동 관련 영농·어로 지역 및 이에 인접한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군정위 본부구역) 내 일부 지역으로 구성된 작전지역(이하 대성동 작전지역이라 지칭함)에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기술하고, 방침을 규정하며, 참모부서 및 기타 기관 또는 부대에 책임을 부여한다. 본 규정이나 관련 근거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문의사항은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유엔사군정위) 비서실에 문의한다. 본 규정에 포함된 방침 및 절차에 대한 예외 신청은 반드시 모두 서면으로 유엔사군정위 비서실에 제출하여 검토 및 결심을 받는다. 신청서에는 신청일자를 기재하고, 예외 신청의 근거를 포함하며, 관련 조치의 협조 담당자를 명시해야 한다.

## 2. 참고문헌

필수 및 관련 문건은 별지 A에 수록되어 있다.

## 3. 약어 및 용어 설명

본 규정에 사용된 약어 및 용어는 용어집에 설명되어 있다.

## 4. 책임

정전협정은 한국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문서 중 하나이다. 정전협정상에 책임이 명시된 모든 지휘관들은 예하 인원들이 모두 정전협정 및 정전협정 후속합의서의 제반 조항과 본 규정의 세부내용을 숙지하도록 한다. 정전협정 제 10항에 의거, 유엔군 사령관 또는 사령관이 지정한 권한자는 남측 비무장지대에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을 책임진다. 대성동 작전지역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과 관련된 이러한 책임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과업을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유엔사군정위 비서실은 유엔사군정위의 집행 기구로, 협의, 점검, 조사, 참관, 정전 준수 활동 관련 부대 교육 및 모든 비무장지대 출입과 군사분계선 통행에 대한 승인을 통해 정전 준수를 감독하는 책임을 갖는다.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은 유엔군 사령관이 임명하며, 유엔사군정위 비서실의 장(長)으로서 정전 사안과 관련해 사령관의 특별 보좌관 역할을 수행한다.

a. 이러한 권한에 따라,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은:

(1) 대성동 작전지역과 관련된 정전협정, 정전협정 후속합의서 및 적용 가능한 모든 유엔사 규정의 시행을 감독하고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2) 대성동 작전지역에서 내에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 실시에 필요한 유엔사의 계획과 방침을 규정한다(하기 5항 참조).

(3) 대성동 작전지역 내에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 실시와 관련한 유엔사 계획, 방침 및 소요 사항을 작성하고, 필요시 유엔사 참모부서들과 협조한다.

(4) 대성동 작전지역 내에서의 유엔사 계획 및 방침 시행을 위한 참모 감독을 제공하고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의 실시를 감독한다.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은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에 다음과 같은 참모 감독을 제공한다.

(a) 대성동 작전지역 관련 유엔사 규정, 계획 및 방침에 대해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에 통지한다.

(b) 이러한 규정, 계획 및 방침을 해석하고,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가 이를 이행하는 것을 지원한다.

(c) 유엔사 규정, 계획 및 방침의 이행 및 준수를 감독한다.

(d) 유엔사 규정, 계획 및 방침의 준수 및 이행 수준에 대해 유엔사군정위 수석대표와 유엔사 참모장을 경유해 유엔군 사령관에게 보고한다.

(5)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군정위 본부구역 및 대성동 작전지역 출입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a) 하기 4b(10)(b)항과 4 c(5)(e)항에 명시된 응급상황 초기 대응 인원(관련 절차는 유엔사 규정 551-4 “한국 정전협정 준수” 참조)

(b) 군정위 비서실과 공동경비구역 유엔사 경비대대 간 양해각서('14. 2. 28)에 따라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에 위임된 방문객

- 신원이 확인된 대성동 주민의 친척 및 친지
- 신원이 확인된 상시 출입 방문판매원 및 택배원

(6) 대성동, 파주시 및 경기도 등의 지자체 관계자들과 연락을 유지하고 협조한다.

(7) 대성동 작전지역 내 유엔사 관련 현안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대성동 주민 대표자 회의에 참석할 유엔사군정위 측 대표자를 지정한다.

b. 공동경비구역 유엔사 경비대대장은:

(1) 대성동 작전지역 내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을 실시하고 유엔군 사령관이 공동경비구역 유엔사 경비대대장에게 부여한 아래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공동경비구역 대한민국 육군(한국군) 경비대대에 대한 유엔군 사령관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된 임무 또는 조치와 연관되어 있거나 연관될 가능성이 있는 한측 및 미측 인원들이 모두 다음 사항들에 대해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한다.

(a) 정전협정 기본 조항.

(b) 정전교전규칙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정전협정 제반 조항에 따른 각 개인의 임무와 책임.

(c) 유엔군 사령관의 명백한 승인 없이 북한군 측 인원 혹은 이들과 같이 근무하는 인원들과의 친교 혹은 비공식적인 소통 금지.

(d) 정전협정 위반으로 추정되는 사항 혹은 실제 위반사항을 모두 보고할 의무 및 이러한 위반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한 이유.

(3) 아래 5 항에 규정된 방침에 따라 대성동 작전지역 내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을 감독하고 시행을 관리한다.

(4) 정전협정, 정전협정 후속합의서 및 유엔사 규정의 제반 조항들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위기상황이나 응급상황 발생 시 대성동 작전지역 보호 및/또는 대피를 위한 우발계획을 수립한다. 우발계획과 이에 대한 수정사항은 유엔사 참모 협조, 위기조치예규 및 유엔사 작전명령 수립, 그리고 유엔사군정위 수석대표와 유엔사 참모장의 추후 검토를 위해 유엔사군정위 비서실에 제출한다.

(5) 대성동 작전지역 내 행정 절차 개선을 위한 수정사항을 유엔사군정위 비서실에 건의 및

제출한다.

(6) 적대행위로부터 대성동 작전지역 내의 모든 아측 인원, 시설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성동 작전지역의 안전을 확보한다.

(7) 안전하지 않거나 인가되지 않은 활동을 미연에 방지하고, 한·미 응급 소방, 의료, 사법 기관과 현지 한측 유관 기관 간 체결된 상호 지원 합의에 따라 유사시 신속한 응급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성동 작전지역으로의 출입과 대성동 작전지역 내에서의 이동 및 활동을 모두 통제한다. (용어 설명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의 “d” 참조) 유엔사의 비상 대응능력은 유엔사의 능력 범위 내에서 초동 조치를 실시하여 응급상황을 진정시키고, 한측 유관 기관에 책임을 신속하게 이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8) 승인된 인원 외 한측에서만 출입이 허가되도록 대성동 작전지역에 대한 출입을 통제한다.

(9) 대성동 작전지역 일대의 모든 아군 및 적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유지하고, 정전협정 위반사항을 유엔사군정위 작전 부비서장과 험프리스 지휘소에 보고한다(관련 절차는 유엔사 규정 551-4 참조).

(10) 대성동 작전지역에 반복적인 상시 출입을 요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이 승인하는 비무장지대 임시출입증을 발급한다(상기 4a(5)항 참조).

(a) 이는 대성동 주민, 고용된 노무자, 대성동에 거주하지 않는 대성동 초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을 포함한다.

(b) 인명 보호, 심각한 신체적 상해 치료·예방 또는 시설물 피해 처리·예방을 위한 응급 조치는 사전 협조 없이 출입이 승인된다.

(c) 기타 모든 출입을 위한 신청서는 상기 4a(5)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유엔사군정위 비서실로 제출해야 한다.

(11)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이 위임한 대성동 작전지역에 대한 임시 출입 허가 권한을 행사한다.

(a) 신원이 확인된 대성동 주민의 친척 및 친지

(b) 신원이 확인된 상시 출입 방문판매원 및 택배원

(12) 대성동 민사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대성동, 파주시 및 경기도 등의 지자체 관계자들과 협조를 유지한다. 영농 작업자들을 위한 경계경호, 유엔사 규정에 대한 수정 제안, 대성동이나 대성동 학교 방문객 및 언론사 방문 등 유엔사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상호 관심사 및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성동 주민 대표자들과 분기별로 회의를 갖는다.

(13) 아래 인원들에게 차량 출입증을 발급한다.

(a) 인가된 방문객

(b) 개인 차량 및 농기계(트랙터, 트럭 및 기타 차량 포함)를 소유한 대성동 주민

(14) 비무장지대 내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개인 차량 및 농기계 포함)의 외부 전면 좌측에 부착하도록 청색 깃발을 발급한다(관련 절차는 유엔사 규정 551-4 참조).

(15) 대성동 작전지역에서 차량(전술 차량, 비전술 관용 차량, 민간 버스, 개인 차량 및 농기계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음)의 안전 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16) 대성동 주민들과 야외작업 계획을 협조한다.

(17) 승인된 영농지역에서 작업하는 대성동 농민들과 이들이 고용한 인원들을 경호하고 보호하기 위한 경계병력을 제공한다.

(18) 전체적인 임무 소요 고려 시 가능할 경우,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이 승인한 지역에서 어로활동을 하는 대성동 농민들을 경호하고 보호하기 위한 경계병력을 제공한다.

(19) 대성동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까지 왕복 운행하는 통학버스의 비무장지대 내 운행 시 경계경호를 제공한다.

(20) 문산과 대성동 사이를 운행하는 민간 버스의 비무장지대 내 운행 시 경계경호를 제공한다.

(21) 대성동 선거 시 투표 절차를 계획, 감독 및 관리한다.

(a) 투표소 설치 및 운영

(b) 공정성 보장을 위한 투표 절차 감독

(c) 개표 확인 및 투표 결과 발표

(22) 대성동 및 인근 영농지역에서의 모든 공사가 유엔사 규정 551-4에 기술된 비무장지대 공사 승인 절차에 따라 승인된 공사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c. 공동경비구역 한국군 경비대대장은:

(1) 공동경비구역 유엔사 경비대대장의 시행지침과 아래 5항에 규정된 방침에 의거하여 대성동 작전지역 내 민사행정 및 구제작업을 위한 계획을 건의하고 시행한다.

(2) 대성동 작전지역 내에서 민사행정 및 구제작업을 실시하는 데 있어 정전협정, 정전협정 후속합의서 및 유엔사 규정 제반 조항들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예규, 작전명령, 방침서한 등의 지침을 수립을 위해 공동경비구역 유엔사 경비대대장을 지원한다. 이와 같은 시행지침 관련 건의사항 및 수정사항을 공동경비구역 유엔사 경비대대장에게 제출한다.

(3) 정전협정, 정전협정 후속합의서 및 유엔사 규정의 제반 조항들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위기상황이나 응급상황 발생 시 대성동 작전지역 보호 및/또는 대피를 위한 우발계획을 공동경비구역 유엔사 경비대대장에게 건의한다.

(4) 대성동 작전지역 내 행정 절차 개선을 위한 수정사항을 공동경비구역 유엔사 경비대대장에게 건의 및 제출한다.

(5) 공동경비구역 유엔사 경비대대장의 작전통제하에서 아래와 같이 부여된 과업을 시행한다.

(a) 적대행위로부터 대성동 작전지역 내의 모든 아측 인원, 시설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성동 작전지역의 안전을 확보한다.

(b) 안전하지 않거나 인가되지 않은 활동을 미연에 방지하고, 한·미 응급 소방, 의료, 사법

기관과 현지 한측 유관 기관 간 체결된 상호 지원 합의에 따라 유사시 신속한 응급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성동 작전지역으로의 출입과 대성동 작전지역 내에서의 이동 및 활동을 모두 통제한다. 용어 설명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의 “d”에 따라, 유엔사의 비상 대응능력은 유엔사의 능력 범위 내에서 초동 조치를 실시하여 응급상황을 진정시키고, 한측 유관 기관에 책임을 신속하게 이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c) 승인된 인원 외 한측에만 출입이 허가되도록 대성동 작전지역에 대한 출입을 통제한다.

(d) 대성동 작전지역 일대의 모든 아군 및 적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유지하고, 정전협정 위반사항을 공동경비구역 유엔사 경비대대장에게 보고하여, 위반사항이 유엔사군정위 작전 부비서장 및 험프리스 지휘소에 보고되도록 한다(전체 책임 목록은 유엔사 규정 551-4 참조).

(e) 대성동 작전지역에 반복적인 상시 출입을 요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이 승인하는 비무장지대 임시출입증을 발급한다(상기 4a(5)항 참조):

○ 이는 대성동 주민, 고용된 노무자, 대성동에 거주하지 않는 대성동 초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를 포함한다.

○ 인명 보호, 심각한 신체적 상해 치료·예방 또는 시설물 피해 처리·예방을 위한 응급 조치는 사전 협조 없이 출입이 승인된다.

○ 기타 모든 출입을 위한 신청서는 상기 4 a(5)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유엔사군정위 비서실로 제출해야 한다.

(f)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이 위임한 대성동 작전지역에 대한 임시 출입 허가 권한을 행사한다.

○ 신원이 확인된 대성동 주민의 친척 및 친지

○ 신원이 확인된 상시 출입 방문판매원 및 택배원

(g) 아래 인원들에게 차량 출입증을 발급한다.

○ 인가된 방문객

○ 개인용 차량 및 농기계(트랙터, 트럭 및 기타 차량 포함)를 소유한 대성동 주민

(h) 비무장지대 내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개인 차량 및 농기계 포함)의 외부 전면 좌측에 부착할 청색 깃발을 발급한다(관련 절차는 유엔사 규정 551-4 참조).

(i) 대성동 작전지역에서 차량(전술 차량, 비전술 관용 차량, 민간 버스, 개인 차량 및 농기계를 포함하나 여기에 국한되지 않음)의 안전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j) 대성동 주민들과 야외작업 계획을 협조한다.

(k) 승인된 영농지역에서 작업하는 대성동 농민들과 이들이 고용한 인원들을 경호하고 보호하기 위한 경계병력을 제공한다.

(l) 전체적인 임무 소요 고려 시 가능할 경우,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이 승인한 지역에서 어로활동을 하는 대성동 농민들을 경호하고 보호하기 위한 경계병력을 제공한다.

(m) 대성동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까지 왕복 운행하는 통학버스의 비무장지대 내 운행



시 경계경호를 제공한다.

(n) 문산과 대성동 사이를 운행하는 민간 버스의 비무장지대 내 운행 시 경계경호를 제공한다.

(6) 대성동 민사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대성동, 과주시 및 경기도 등의 지자체 관계자들과 협조를 유지하는 데 있어 공동경비구역 유엔사 경비대대장을 지원한다. 영농 작업자들을 위한 경계경호, 유엔사 규정에 대한 수정 제안, 대성동이나 대성동 학교 방문객 및 언론사 방문 등 유엔사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상호 관심사 및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성동 주민 대표자들과 분기별로 회의를 갖는다.

(7) 대성동 선거 시 투표 절차를 계획, 감독 및 관리하는 데 있어 공동경비구역 유엔사 경비대대장을 지원한다.

(a) 투표소 설치 및 운영

(b) 공정성 보장을 위한 투표 절차 감독

(c) 개표 확인 및 투표 결과 발표

(8) 대성동 및 인근 영농지역에서의 모든 공사가 유엔사 규정 551-4에 기술된 비무장지대 공사 승인 절차에 따라 승인된 공사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데 있어 공동경비구역 유엔사 경비대대장을 지원한다.

d. 유엔사 기참부장은 유엔사의 대성동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 실시를 위한 계획 및 방침 수립에 대해 조언하고 지원한다.

e. 유엔사 공보실장은:

(1) 대성동 작전지역을 포함한 비무장지대 출입을 위한 언론사의 출입신청서를 검토한다.

(2) 모든 언론사의 대성동 작전지역 출입신청서에 대한 승인/불승인 여부를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에게 건의한다.

(3) 대성동 작전지역에 출입하는 언론 단체와 동행할 유엔사 공보실 안내요원을 배정하거나 이를 대리할 권한을 위임받을 기관 및 개인을 지정한다.

(4) 모든 언론사 인원들이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정전협정 후속합의서에 따라 청색 완장을 착용해 식별되도록 한다.

f. 대성동 이장:

(1) 대성동의 전반적인 관리, 후생 및 행정을 책임진다.

(2) 유엔군 사령관, 대성동 민정중대장, 공동경비구역 한국군 경비대대장, 공동경비구역 유엔사 경비대대장 및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을 상대로 모든 대성동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한다.

(3) 대성동 농민들이 일일 야외작업 계획을 사전에 대성동 민정중대와 협조하도록 한다.

(4) 필요시 또는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이나 공동경비구역 유엔사 경비대대장이 요청 시, 영농 작업자들을 위한 경계경호, 유엔사 규정에 대한 수정 제안, 대성동이나 대성동 학교 방문객 및 언론사 방문 등 유엔사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상호 관심사와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갖는다.

(5) 지정된 유엔사군정위 인원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한다.

(6) 대성동 주민들의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7) 모든 언론사의 대성동 작전지역 출입신청서에 대한 동의/부동의 여부를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에게 건의한다.

## 5. 정책

a. 배경. 대성동은 정전협정 후속합의서에 의거하여 인가되었으며, 대한민국 정부의 동의와 지원하에 유엔사가 설립하였다.

(1) 대성동 주민들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들로, 유엔군 사령관의 작전 및 행정 통제 지역에서 거주한다.

(2) 대성동 주민 및 대성동 작전지역에서 근무하거나 이곳을 출입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모든 민·형사법, 규칙 및 규정을 적용받는다. 대한민국의 법률, 법규 및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대한민국의 지방 또는 중앙 정부의 관련 사법기관에 회부될 수 있다.

(3) 유관 사법기관들의 출입, 이동 및 활동을 비롯한 모든 출입, 이동 및 활동은 대성동 작전지역 내 인원, 시설 및 재산의 안전, 보호와 경계의 보장을 책임지도록 지정된 군 당국의 통제를 받는다.

b. 대성동 작전지역 내에서의 이동 통제. 유엔사군정위, 공동감시소조, 공동경비구역 유엔사 경비대대, 공동경비구역 한국군 경비대대의 구성원들에게는 대성동 작전지역 출입 및 그 안에서의 이동에 대한 완전한 자유가 허가된다. 그 외의 인원들은 모두 대성동 작전지역 출입 시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c. 대성동 거주. 정전협정 및 정전협정 후속합의서에는 비무장지대가 설정되기 전부터 이 지역에 거주했던 민간인들이 비무장지대 내에서 계속 영농에 종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이 규정되어 있다.

(1) 원(原)주민은 상시 거주지를 대성동에 유지하며, 이 곳에서 1년 중 최소 8개월(240일)간 거주하는 경우에만 주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1년 중 4개월 이상을 마을 외부에서 거주하는 자는 공동경비구역 유엔사 경비대대장이 허가한 예외적인 경우(예: 입원, 대성동 외부 학교 재학, 대성동 외부 학교에 다니는 자녀 양육)를 제외하고는 대성동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공동경비구역 유엔사 경비대대장은 승인에 앞서 이를 유엔사군정위 수석대표와 유엔사 참모장이 검토할 수 있도록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대성동의 인구 변동은 출산, 사망, 합법적인 입양 또는 여성이 혼인을 통해 대성동 외부에서 대성동 원주민의 세대로 편입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유엔사는 혈족 및 상속에 대한 대한민국 법률을 인정한다. 그러나, 대성동 내의 시설물, 농지 등 영농권 혹은 재산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려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엔군 사령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유엔사군정위가 지자체의 요청을 승인함에 따라, 대성동에 거주하지 않는 대성동 초등학교 교직원 및 학생들의 대성동 작전지역 출입은 허가된다.

(4) 대성동 원주민들에게는 비무장지대 임시출입증이 발급된다.

(5) 대성동 주민은 통상적으로 주간에 대성동 마을과 캠프 보니파스의 브라보 초소 사이, 대성동 마을 내부, 그리고 협조 및 허가된 대성동 영농·어로 지역(용어 설명 “대성동 작전지역” 참조)에서 이동의 자유가 허가되지만, 지정된 구역 외부에 위치한 어로지역에 출입하거나 그러한 지역에서 이동할 경우에는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및 한국군 제 1 보병사단과의 추가 협조가 필요하다. 대성동 주민이 유엔사군정위 비서실 및 현지 부대 지휘관의 분명한 허가 없이 관문점(공동경비구역), 중립국감독위원회 스위스·스웨덴 대표단 캠프, 비무장지대 내 군사기지 및 시설에 출입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인원은 체포되어 현지 대한민국 정부의 사법기관에 회부되거나, 대성동 주민 자격이 정지 또는 박탈될 수 있다.

(6) 위기상황이나 자연재해 발생 또는 군사적 상황 악화 시, 유엔사는 대성동 작전지역의 모든 비전투요원을 비무장지대 밖의 안전한 피난처나 대한민국 정부 당국이 통제하는 지역으로 대피하도록 명령하고 지원할 수 있다.

(7) 대성동 주민들은 유엔사와 대한민국 정부 지자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이장을 주민들 중에서 선출한다. 대성동 이장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d. 대성동에서 초청한 방문객. 상시 또는 반복적인 대성동 출입을 요하는 방문객들은 비무장지대 임시출입증을 발급받는다.

(1) 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성동에 거주하지 않는 고용된 노무자, 대성동 초등학교 교직원과 학생 및 학부모를 포함하지만 이들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2) 인명 보호, 심각한 신체적 상해 치료·예방 또는 시설물 피해 처리·예방을 위한 응급 조치는 사전 협조 없이 출입이 승인된다.

(3) 기타 모든 출입 신청은 상기 4a(5)항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유엔사군정위 비서실로 제출해야 한다.

e. 차량. 대성동 주민들은 개인 차량 및 농기계(트랙터, 트럭 및 기타 차량 포함) 운행을 위한 차량 출입증을 발급받는다. 출입증 발급이 가능한 차량 대수는 세대당 두 대로 제한한다.

(1) 전술용 차량, 비전술용 관용 차량, 민간 버스, 개인 차량 및 농기계를 포함해 비무장지대 내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유엔사 규정 551-4 및 551-5 에 명시된 바에 따라 차량의 외부 전면 좌측에 적절한 차량 표식용 깃발을 부착한다.

(2) 전술용 차량, 비전술용 관용 차량, 민간 버스, 개인 차량 및 농기계를 포함해 비무장지대 내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대한민국의 차량 관련 법적 요건 및 모든 관련 유엔사 규정을 준수한다.

(3) 본 방침에 대한 예외 신청은 본 규정 1 항에 따라 제출한다.

f. 영농. 대성동 농민들은 일일 야외작업 계획을 대성동 민정중대와 협조해야 한다. 대성동 민정중대는 기협조된 구체적인 소요에 따라 적절한 경호병력을 배치하고, 경계 절차를 지시하며, 농민들과 이들이 고용한 자들이 승인된 영농·어로지역에서 작업하는 동안 준수해야 하는 출입 시간 등의 지시사항을 규정한다.

g. 학교. 2011 년 12 월 1 일부로 유엔사가 승인한 대성동 초등학교의 학생 정원은 35 명이다. 학생 정원을 늘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성동 초등학교장 혹은 그 상위 직급의 교육청 관계자가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에게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은 승인에 앞서 유엔사군정위 수석대표와 유엔사 참모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신청서는 대성동 이장과 대한민국 정부의 관계 당국이 이를 지원하고, 공동경비구역 유엔사 경비대대장이 경계능력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고 판단하며,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이 정전협정에 부합한다고 확인하는 경우 승인될 수 있다.

h. 민간 운수. 민간 버스는 공동경비구역 유엔사 경비대대가 판단하여 제공하는 적절한 경계경호하에서

캠프 보니파스의 알파 초소에서 대성동 간의 노선을 운행하는 것이 허가된다.

(1) 민간 버스의 운행 일정은 이에 우선하는 다른 경계소요로 인해 제한될 수 있다. 대성동에 거주하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성동 초등학교까지 왕복하는 통학버스의 운행은 인가된다.

(2) 비무장지대 내에서 운행하는 버스는 차량의 외부 전면 좌측에 청색 깃발을 부착한다.

i. 어로. 대성동 주민들은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이 승인한 영농지역 내의 저수지에서 대성동 민정중대와의 협조를 거쳐 어로활동을 하는 것이 허가된다. 주민들의 어로활동은 적절한 경계경호하에서만 실시되며 공동경비구역 유엔사 경비대대장이 결정하는 경계자원의 가용 여부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다.

j. 대성동 작전지역 내에서의 민군작전. 정전협정 제 10 항은 유엔군 사령관이 비무장지대 내에서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을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대성동 작전지역의 경우, 비무장지대 내 대성동 작전지역에서 민간인이 거주하고 영농·어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군사 통제 및 관할권으로 인해 배제된 기능을 제외한 지방 정부의 통상적인 기능 대부분을 대한민국 정부 당국이 제공한다.

(1) 본 규정에 정의된 바에 따라,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대성동 작전지역에서 유엔사의 통제하에 민군작전 과업을 수행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인가한다. 대성동 민정중대는 대성동 작전지역 내에서 아래와 같은 임무를 실시한다:

(a) 대성동 출입 통제를 위한 초소 근무, 마을 주민, 시설 및 재산의 방호와 보호를 위한 순찰 및 감시 활동, 일별 주민 거주 현황 확인을 통해 대성동 마을의 안전 확보

(b) 대성동 주민, 대성동 출입을 인가받은 정비·공사 장비를 포함하는 모든 방문객에 대해 차량 경호 제공

(c) 부대 방호태세 강화 기간 중 경계 조치 강화

(d) 범죄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대한민국 경찰 수사당국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건 현장을 보전하기 위해 파주 경찰서와 협조 및 지원

(e) 음주 운전 금지를 포함한 일반도로·고속도로 안전 확보

(f) 위기상황이나 자연재해 발생 또는 군사상황 악화 시 비전투원 후송

(g) 인명 보호, 심각한 신체적 상해 치료·예방 또는 시설물 피해 처리·예방을 위한 대한민국 응급 조치반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지원하거나 초기 대응인력 제공

(h) 유엔사가 통제하는 비무장지대 내에서 대성동 주민, 선출직 공무원 및 기타 대한민국 지자체 관계자들과의 노력 통합을 위해 협조

(i) 대성동 지역 선거 시 투표 지원

k. 언론사의 대성동 출입 신청. 정전협정 후속합의서에는 언론사의 대성동 작전지역을 포함한 비무장지대 방문에 관한 방침이 명시되어 있다.

(1) 언론사의 대성동 방문은 유엔사 공보실을 통해 신청해야 하고, 공동경비구역 유엔사 경비대대장이 가용한 경계자원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야 하며,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이 승인해야 한다.

(2) 신청서는 방문 희망일로부터 최소 72 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승인을 얻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아래와 같다.

- (a) 방문단체의 규모와 구성
- (b) 비무장지대 출입 시간 및 출입 지점
- (c) 비무장지대 내 방문 지역
- (d) 출입 사유

(3) 언론사 인원은 공보장교, 선임 공보부사관 혹은 유엔사 공보실장이 지정한 동급의 민간인 공보요원과 항상 동행한다.

(4) 언론사 인원은 정전협정의 모든 제반 조항을 준수하고, 정전협정 후속합의서에 따라 식별용 청색 완장을 착용하며, 이들과 동행하는 경계경호 병력의 구체적인 안전 지시를 준수한다.

1. 비무장지대 외부에서 들어오는 민간 차량 및 용역업체 직원. 비무장지대 외부 민간 용역업체 직원 및 차량의 대성동 작전지역 출입을 위한 신청서는 관련 대성동 주민이 대성동 민정중대 및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를 통해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는다.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1) 방문단체의 규모와 구성
- (2) 비무장지대 출입 시간 및 출입 지점
- (3) 비무장지대 내 방문 지역
- (4) 출입 사유

(5) 해당 인원은 적절한 임시출입증을 발급받으며, 정전협정에 따라 작업 인원임을 나타내기 위해 배지 혹은 완장을 착용한다. 비무장지대 내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차량의 외부 전면 좌측에 청색 깃발을 부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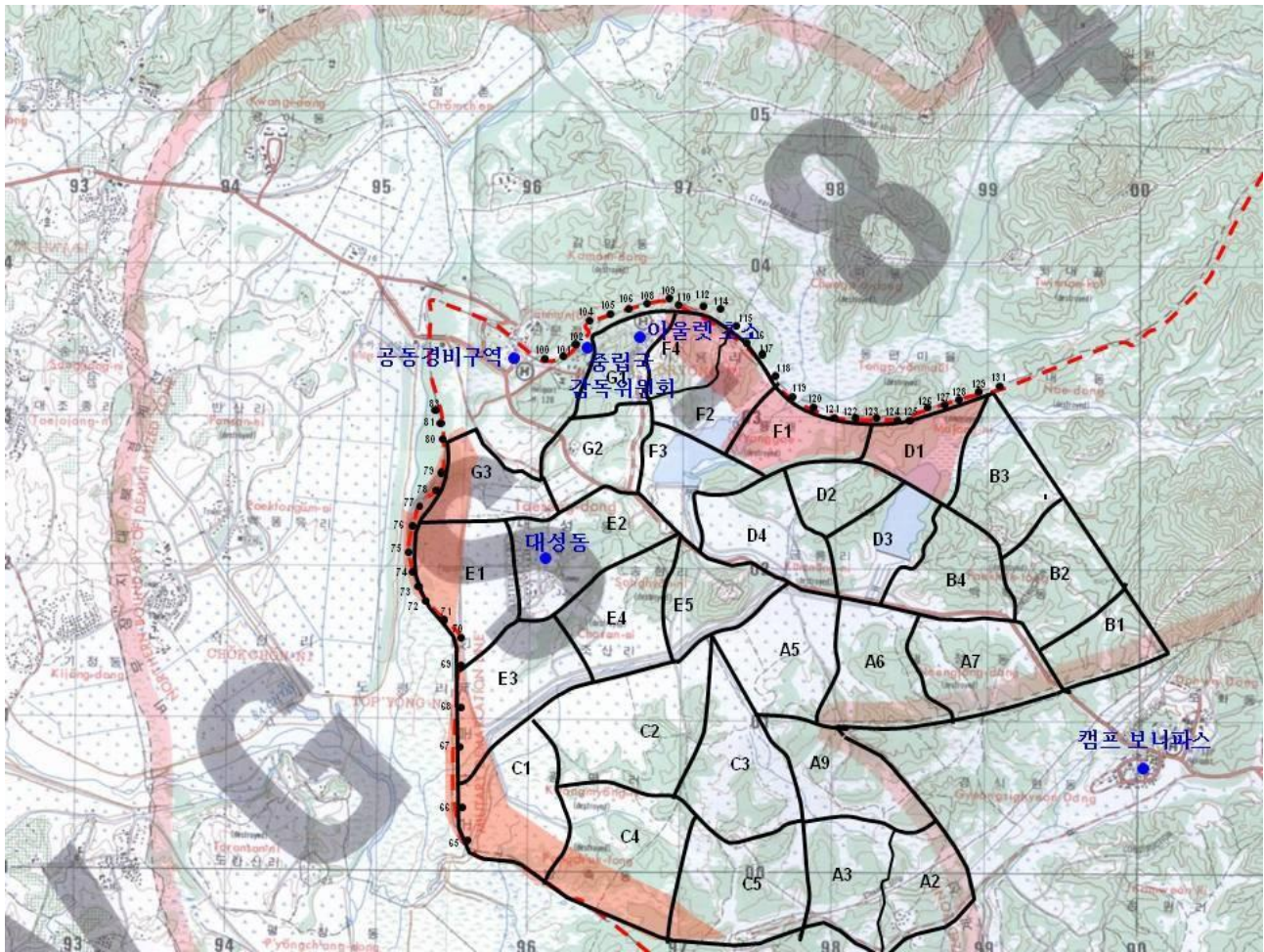


표 1. 대성동 작전지역 지도

별지 A  
관련 근거

제 1 절. 필수 문건

유엔사군정위 비서실과 공동경비구역 유엔사 경비대대 간 양해각서, '14. 2. 28

1953년 7월 27일 자 정전협정 제 1 권(제 7, 8, 9, 10, 11 항) 및 정전협정 후속합의서

- 1953년 10월 19일 제 25 차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에서 체결된 후속합의서 “D”; 대성동 설정
- 1953년 8월 3일 제 6 차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에서 체결된 후속합의서 “F”; 대성동 설정, 마을 주민 명부 정기 보고 명문화
- 1953년 9월 16일 제 19 차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에서 승인된 후속합의서 “G”; 비무장지대 내 인원 및 차량의 증명서, 휘장 및 표식 규정
- 1953년 7월 30일 제 3 차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에서 체결된 후속합의서 “Q”; 비무장지대 내에서 군사경찰의 민사경찰 기능 수행 허가

유엔사 규정 551-4, 한국 정전협정 준수

유엔사 규정 525-4, 정전 교전 규칙

제 2 절. 관련 문건

미 합동교범 1-02, 미 국방부 군사 및 관련 용어 사전.

미 합동교범 3-68, 비전투원 후송작전

미 합동교범 3-57, 민군작전

유엔사 규정 551-5, 군정위 본부구역 안보견학

## 용어집

### 제 1 절. 약어

AA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한국 정전협정
AO	Area of Operations	작전지역
AROE	Armistice Rules of Engagement	정전교전규칙
ASEC-O	Assistant Secretary - Operations	작전 부비서장
CA	Civil Affairs	민사부대
CC Humphreys	Command Center, Humphreys	험프리스 지휘소
CDR	Commander	사령관/지휘관
CFC	Combined Forces Command	연합사/한미연합사령부
CoS	Chief of Staff	참모장
DMZ	Demilitarized Zone	비무장지대
DOD	Department of Defense	미 국방부
IAW	In Accordance With	의거
DSD	Daesong-Dong	대성동
DSD AO	The area of operations comprising the village of Daesung-dong, its associated farming/fishing areas and the adjacent portions of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Headquarters area under United Nations Command control	대성동 작전지역/대성동 마을, 대성동 관련 영농·어로 지역 및 이에 인접한 유엔사 통제하에 있는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 내 일부 지역으로 구성된 작전지역
JP	Joint Publication	합동교범
JSA	Joint Security Area	공동경비구역
KPA	North Korean People's Army	북한군
MACHA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Headquarters Area	군정위 본부구역/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
MDL	Military Demarcation Line	군사분계선
PAO	Public Affairs Officer	공보실장
POV	Privately owned vehicle	개인 차량
ROK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ROKA	Republic of Korea Army	대한민국 육군
ROKG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정부



ROKSB-JSA	Republic of Korea Army Security Battalion – Joint Security Area	공동경비구역 한국군 경비대대
UNC	United Nations Command	유엔사/유엔군사령부
UNCMAC	United Nations Command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유엔사군정위/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UNCMAC SEC	Secretary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유엔사군정위 비서장
UNCMAC SM	Senior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유엔사군정위 수석대표
UNCSB-JSA	United Nations Command Security Battalion – Joint Security Area	공동경비구역 유엔사 경비대대
U.S.	United States	미국

## 제 2 절. 용어 설명

**민사행정.** (1) 아군 지역에서 현지 정부와의 합의하에 현지 정부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특정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외국 정부가 수립하는 행정; 또는 (2) 미군이 주둔하는 적대적인 지역에서 토착 민간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외국 정부가 행정, 입법 및 사법권을 행사하기 위해 수립하는 행정.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 본 규정에서 대성동 작전지역에 적용되는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통상적으로 지역정부가 수행하는 권한 중 특정 권한을 유엔사가 행사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5j 항 참조).

a.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유엔사는 대성동 작전지역에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 제공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 당국과 협조 및 협력한다. 유엔사는 유엔군 사령관이 정전협정을 인정하는 한, 또는 대한민국 유관 정부기관이 대성동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인수할 수 있을 때까지 대성동 작전지역에서 민사행정과 구제사업을 제공한다.

b. 대성동은 유엔사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비무장지대 내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유엔사는 대성동 작전지역 내의 모든 아측 인원, 시설 및 재산을 적대행위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지 않거나 인가되지 않은 활동을 방지하며, 필요시 응급업무를 신속히 수행하기 위해 대성동 작전지역의 안전을 확보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유엔사는 해당 시점의 군사적 상황에 따라 대성동 작전지역 내의 모든 출입, 이동 및 활동에 대한 권한과 통제를 행사한다.

c. 위기상황이나 자연재해 발생 또는 군사상황 악화 시 유엔사는 모든 비전투원을 대성동 작전지역으로부터 대피하도록 명령하고 지원할 수 있다.

d. 유엔사는 응급상황 시 초기 대응 능력을 제공할 수 있으나, 유엔사의 자원은 대한민국의 유관 기관이 상황을 인수할 수 있을 때까지 위협하거나 불안정한 상황을 완화시키고, 재산 피해(화재 등)를 줄이거나 예방하며, 부상을 완화시키고, 위협에 처한 인원을 안정시키기 위한 즉각적인 응급 지원만을 위한 것이다.

e. 유엔사는 안전과 경계가 보장되는 환경에서 영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대성동 야외작업을 협조한다. 마찬가지로, 유엔사는 대성동 마을과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엔사 활동과 관련해서 대성동 이장과 회의하고 협조한다.

f. 필요한 경우, 유엔사는 대성동 선거 시 원활한 투표 활동을 위해 지원을 제공한다.

**민사부대.** 민사작전을 수행하고 민군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히 편성·훈련되고 준비된 현역 및 예비군으로 구성된 부대로서, CA 라고도 칭한다. (합동교범 3-57) (본 용어와 정의는 기존 용어와 정의를 대체하며, 합동교범 1-02의 차기 개정판에 포함되도록 승인되었다.)

**공동경비구역 한국군 경비대대.** 관문점(공동경비구역), 대성동 자유의 마을(마을 농민들이 사용하고 경작하는 주변 영농지역 및 연못을 포함) 및 아울렛 초소에 경계를 제공하고 유엔군 사령관의 비무장지대 안보견학을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히 편성, 충원되고 준비된 대한민국 육군 제 3 야전군 소속 별도의 보병대대. 공동경비구역 유엔사 경비대대장은 공동경비구역 한국군 경비대대에 대한 유엔군 사령관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

**경계.** (1) 군 부대, 군 활동 또는 군 시설의 유효성을 저해시킬 의도가 있거나, 저해시킬 수 있는 모든 행위로부터 군 부대, 군 활동, 군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 (2) 적대행위 혹은 적대적인 힘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도록 방어책을 수립하고 유지함으로써 달성한 상태. 상기 정의된 경계는 대성동 작전지역의 경계를 담당하는 헌병을 포함해 비무장지대 전역의 헌병에게 적용된다.

**참모 감독.** 사령관 예하의 기타 참모부 및 개별 인원들에게 사령관의 계획 및 방침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그러한 계획과 방침을 해석하며, 참모부가 이를 실행하는 것을 지원하고, 그 준수 정도를 파악하여 사령관에 자문을 제공하는 절차.

**대성동 작전지역.** 남측 비무장지대 내 좌표 52SBH 95970200 지점의 마을과 좌표 52SBG 96999970 지점에서부터 군사분계선을 따라 북서쪽으로는 52SBH 95560321 지점을 경계로 하고, 북동쪽으로는 군사분계선을 따라 52SBH 98940296 지점을 경계로 하며, 남쪽으로 비포장도로를 따라 제 1 보급로 52SBH 99360133 지점으로 이어지고, 군사분계선을 따라 농지를 가로질러 다시 남서쪽으로 돌아와 남쪽으로는 52SBG 96999970 지점을 경계로 하는 주변 농지 및 유엔사 측 군정위 본부구역(표 1 지도 참조)의 인접 부분을 포함하는 지역.

**대성동 민정중대.** 대성동 작전지역 내에서 유엔사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편성된 공동경비구역 한국군 경비대대의 헌병 중대.